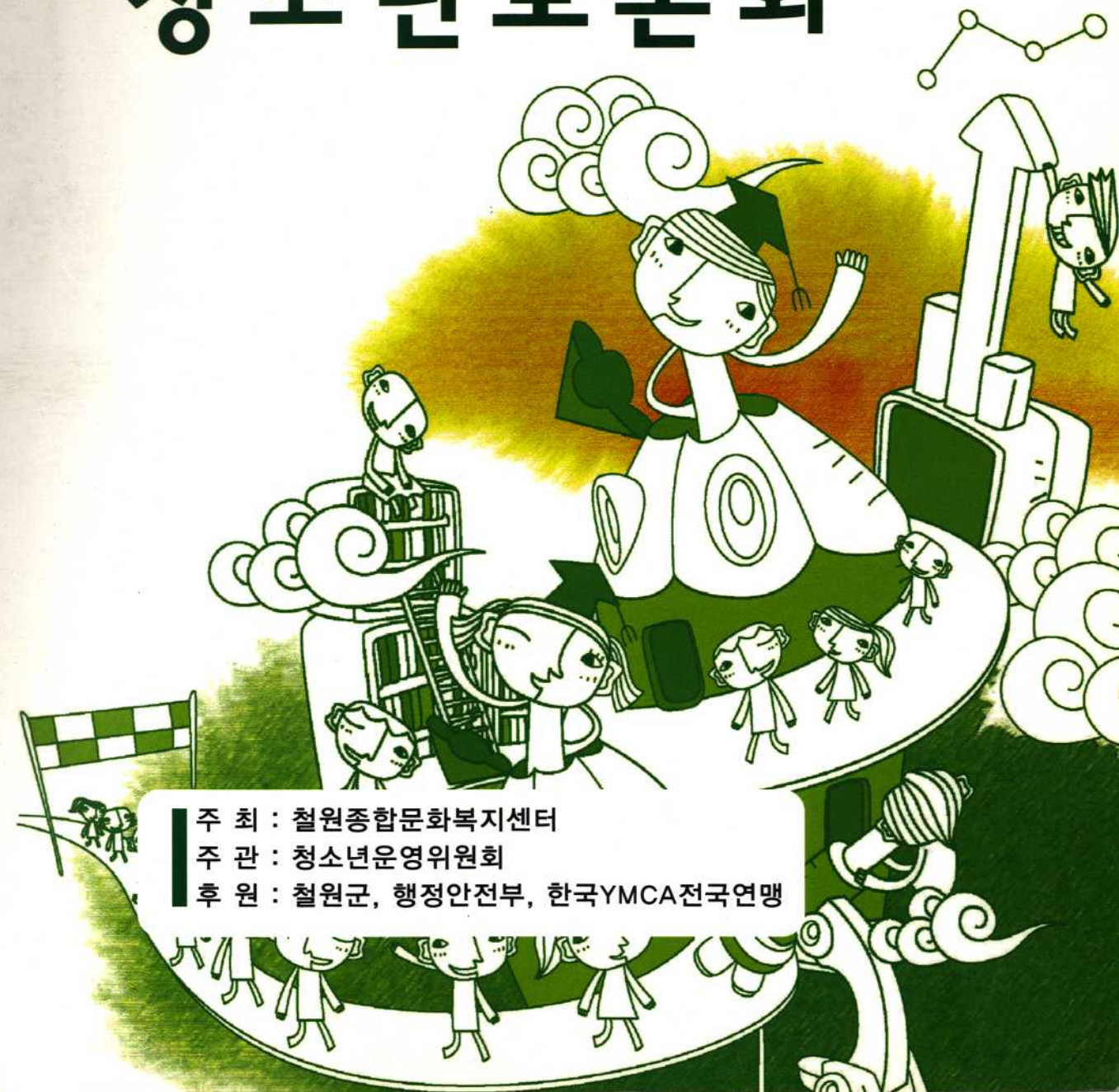


「2011년도 행정안전부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시행과
강원도학생인권조례안 진행에 따른
청소년이 보이는 철원지역을 만들기 위한 청소년 토론회

제 4 회 청소년 토론회



주 최 :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주 관 : 청소년운영위원회
후 원 : 철원군, 행정안전부, 한국YMCA전국연맹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www.ccwc.co.kr

청소년에게 사랑과 희망을! 철원에 생명과 평화를!!

269-821 철원군 철원읍 화지리 693
TEL : 033-4 5 5-9192~3
FAX : 033-4 5 5-9195

『2011년도 행정안전부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시행과
강원도학생인권조례안 진행에 따른
‘청소년이 보이는 철원지역을 만들기 위한 청소년 토론회’

주 최 :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주 관 : 청소년운영위원회

후 원 : 철원군, 행정안전부, 한국YMCA전국연맹

진행자 : 고석영(철원고,3)

1. 인 사 말

-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신호승관장
- 청소년운영위원회 송우정위원장

2. 학생인권조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나

- 인권운동가 공현

3. 경기도학생인권조례 中

4가지 영역에 대한 청소년 발제문

- 제2절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 제9조(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 제11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 제12조(사생활의 자유)

<부록>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

청소년에게 사랑과 희망을 철원에 생명과 평화를!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청소년의 달 5월이 지나 녹음이 짙푸른 6월입니다! 우리사회의 청소년들이 저들과 산처럼 푸르렀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꿈과 희망을 향해 마음껏 소리치고 달리는 청소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청소년이 살기 좋은 철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지역 청소년들이 청소년인권과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토론회를 한다니 우리 청소년들이 기뻐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번 토론회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에게 좀 더 관심을 갖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작은 물 방울 하나하나가 모여 큰 강물을 이루듯, 작은 불씨가 큰 불을 일으키듯, 언젠가 청소년들이 활짝 웃을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청소년 인권과 권리! 아니 이러한 고차원적인 단어가 아니더라도 청소년들에게는 많은 기회를 줘야 합니다. 생각할 수 있는 기회! 말할 수 있는 기회! 들을 수 있는 기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모든 기회까지도 빼앗아 버리고 그저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청소년들에게 주문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행가 노래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청소년으로 키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넌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라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심지어 꿈도 희망도 어른들이 대신 꺾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시대의 청소년들이 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사회에서 청소년들의 꿈은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예 청소년들에게는 꿈을 꿀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질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꿈을 꾸지도 말라고 합니다. 꿈은 좋은 대학에나 들어가서 꾸라며 고등학교마다 기숙사를 만들고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늦은 밤까지 불 켜져 있는 학교와 기숙사 창문을 볼 때면 가슴이 아파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진정으로 청소년들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끝으로 이러한 토론회를 기획하고 준비한 담당자와 청소년운영위원회에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관장 신호승

안녕하세요.

저는 peace maker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우정입니다.
우선, 제4회를 맞이하고 있는 토론회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토론회는 철원 관내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이 참가 할 수 있으며 항상
배우기만 하는 수동적인 프로그램이 아닌 스스로 사회에 관심을 가지며 사
회문제에 대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어 사회의 한 일원으로써 참여 하자는 취
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준비할 때도 주제에 적합하도록 사소한것 까지 모두 함께 토
론하여 정하였으며, 자료를 찾을 때에도 누가 말하지 않아도 먼저 자발적으
로 참여하여 진행해 나아갔습니다.

그리하여, 제4회 토론회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을 주제로 하여 그 중에서
지금 사회에서 대두가 되고 있는 체벌금지, 개성, 핸드폰,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 에 대해 토론을 하여 철원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려고 합니다.

각 주제별 토론회를 보실때 생각하시던 부분과 다른 부분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각 패널들에게 질문하시고 토론회가 끝났을 때에는 생각의
변화에 대해서 말해주시면 더욱 뜻이 깊고 참여도 높은 토론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토론회를 다 보시고 돌아가실 때에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
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시며 후에 만들어질 강원도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서도 관심있게 지켜봐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철원 청소년들이 사회에 대해 더욱 높은 관심을 가질 수 있으며, 사회
의 한 일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즐겁고 유익한 토론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 조 발 제

학생인권조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나

공 현(인권전문가)

학생인권조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나

- 공 현(인권전문가)

학생인권조례의 주요 내용

(이미 제정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와,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광주 학생인권조례안 등의 내용을 종합한 것입니다.)

◆ 권리

- ▲ 두발복장자유화 (경기도의 경우 일부 애매한 조항)
- ▲ 체벌과 언어폭력 등 금지
- ▲ 성적, 경제력, 가족형태, 외모, 출신 국가, 성별, 성적 지향, 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 ▲ 정규수업시간 외 학습의 자유 보장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 강제 금지)
- ▲ 사생활의 자유 보장 (소지품 검사 및 압수 금지, 교우관계에 대한 권리 등)
- ▲ 개인 정보에 대한 권리
- ▲ 건강권 (보건실, 휴식 등에 대한 권리)
- ▲ 급식에 대한 권리 (질 좋은 급식, 차별 없는 급식, 급식 운영에 참여할 권리)
- ▲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교육시설 등)
- ▲ 상담 및 복지를 누릴 권리
- ▲ 학교 운영과 교육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 (학생 자치 포함)

◆ 실현 방안

- ▲ 학생, 교사, 보호자에 대한 정기적인 인권교육
- ▲ 학교생활규정 등 학칙 개정
- ▲ 학생인권심의위원회, 학생인권위원회 등 학생인권에 대한 전문 기구 운영
- ▲ 정기적인 학생인권실태조사 및 학생인권실천계획 수립
- ▲ 교육정책에 대해 '인권영향평가' 실시
- ▲ 학생의회, 학생참여위원회 등 학생 기구 운영
- ▲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센터 등 구제 기구 운영

지금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곳은 어디 어디 일까? 경기도 한 곳이다. 언론에서 요란하게 떠들어대는 것에 비해서 초라한 실적이다. 그럼에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 움직임은 본격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서울에서는 지난 5월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성사가 발표되었고 교육청 역시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북, 전남, 광주, 강원도 등에서는 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

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경남, 충북, 대구, 인천 등에서는 서울의 주민발의 성공에 힘입어 학생인권조례를 주민발의로 제정할 계획이다. 만일 정말 낙관적으로 생각해서 현재 추진 중인 지역 모두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다면 아마도 한국 전체 인구의 80% 이상이 학생인권조례의 적용을 받는 시대가 펼쳐질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어디에서 왔나 : 학생들의 저항과 행동

애초에 학생인권조례와 같이 학생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 사회적 의제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학생들의 저항과 행동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1995년 강원도 춘천고 최우주 씨가 강제자율학습·보충수업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며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온라인에 글을 올린 이후로 조금씩 싹을 키워가던 학생인권 운동은 2000년대 초반, 학생인권의 여러 의제들이 사회적 의제로 공론화되도록 만드는 데 성공했다. 2000년의 두발규제 폐지 운동을 비롯하여 0교시, 강제적 야간자율학습 문제, NEIS와 정보인권, 학생회 법제화(혹은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강의석 씨가 제기한 학교내 종교자유 등 거의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학생인권의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2005년, 학생들 1000여명이 내신등급제 및 입시경쟁 반대를 외치며 촛불을 들고, 두발자유를 요구하는 온라인서명운동과 거리 집회 등이 연달아 열리면서 학생인권의 문제는 사회적 의제로서 그 자리를 확고히 했다. 이후 2005~2006년에 연달아서 서울 송파공고와 성남 풍생고, 서울 양동중, 수원 청명고 등에서 두발자유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학내시위가 일어났다. 서울 동성고에서는 오병현 씨가 두발자유, 사상의 자유 등을 비롯하여 학생인권 보장

을 요구하며 1인시위를 했다. 2007년에는 울산 옥동중, 신정중에서 하루 사이에 연달아서 두발자유 체벌금지 등 학생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학내시위가 일어났다.

학생들의 이와 같은 저항들은 해당 학교의 규칙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으로 학생인권 문제를 이슈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송파공고에서의 종이비행기 시위가 그 인상적인 광경으로 많이 회자되었고, 양동중에서의 시위는 최초로 중학교에서 두발자유 학내시위가 일어났다는 것이 주목을 받았다. 그밖에도 수많은 학교 안에서 학생들은 서명운동을 하고 전단지 배포하며 학생인권을 요구하는 크고 작은 행동을 벌였다. 사실 학교 안의 폭력을 고발하는 동영상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 자체도 용기있는 저항이라고 볼 수 있었다. 그런 행동들은 때로는 학교 측의 부당한 탄압으로 좌절에 부딪치기도 했고, 때로는 학교를 어느 정도 바꾸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학생인권조례와 학생인권법이 등장한 것도 이 시기였다. 인권 문제를 이야기하는 학생들의 요구가 쏟아져 나오자 학생인권 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한 방법이자 운동의 목표로 학생인권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다. 진보정당이자 유일하게 청소년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었던 민주노동당에서는, 청소년위원회가 2005년 두발자유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행동이 계속 이어지자 두발자유화 법안을 만드는 것을 당에 건의했다고 한다. 당 정책실에서는 두발자유 뿐 아니라 학생인권의 여러 문제들이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학생들의 인권 전반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여기에 “학생인권법”이라는 이름을 붙여 최순영 의원을 대표로 하여 발의했다.

학생인권법은 교육운동과 시민운동 단체들이 모여서 ‘아이들살리

기운동본부'를 결성하여 지지를 표명하고, 또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서명을 모아오고, 청소년인권단체들이 전국 순회 행진, "미친 학교를 혁명하라" 학생인권 보장 요구 집회를 여는 등 많은 노력 속에서 국회에 상정되었다. 하지만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 등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교총과 한나라당 등의 반발로 대부분의 구체적 내용이 삭제되고, 초중등교육법 18조의4 학생인권 보장 의무 조항이 신설되는 정도의 성과를 남겼다.

한편 광주에서는 시민단체들이 역시 계속해서 학생인권의 의제들이 제기된 2000년대 초반의 상황 속에서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2005년부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비록 당시 광주에서는 교사들이나 교육청의 반대로 제정이 무산되었지만, 광주의 이 시도는 몇 년 후 교육감 주민 직선의 시대를 맞이하며 다시 쟁점이 될 "학생인권조례 운동"의 첫 탄생이라는 의의가 있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조례나 법률로 학생인권을 보장한다는 아이디어 자체가 2005년 2006년을 거치며 생겨난 것이었다. 학생회 법제화라면 몰라도, 두발자유화나 강제 야간자율학습 금지 등의 내용을 법으로 만든다는 것은 그 이전까지는 학생인권운동의 주체들이 별로 고려해본 적이 없었던 방법이었다. 이는 정당과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 안은 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학생인권운동의 주체들 사이에서는 "학교는 학생의 두발을 규제할 수 없다"와 같은 내용의 법이 있다면 그건 그것대로 우스운 일이라는 생각도 약간 있었다.)

이처럼 2005~2006년 학생인권법과 광주 학생인권조례 운동을 통해, 학생인권의 제도화가 학생인권운동의 하나의 목표로 설정되었다. 동시에 교육운동 역시 이를 자신들의 의제 중 하나로 받아

들었다. 2008년 서울 교육감 선거와 2009년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민주·진보교육감 후보들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포함되었다.

이 과정에서도 2008년 광명 진성고등학교 학생들의 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학내시위와 UCC 동영상 등을 통한 학내 인권 현실에 대한 폭로가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에 힘을 실어주었다. 마산 용마고에서는 학생들이 0교시 반대, 두발자유 등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하다가 학교에 의해 제지당하자 이에 맞서 촛불시위를 하려고 시도한 사건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그리고 2008년 촛불집회에 나서며 정치적 사회적 주체로 청소년들이 새롭게 주목을 받은 것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탄생 과정

광주에서 처음으로 제기되었던 학생인권조례에 이어, 경남에서는 경남교육연대가 2008년부터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경남교육연대의 학생인권조례안은 두발규제와 체벌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학생인권 운동 측의 많은 비판을 받았고, 또한 교육위원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했다.

2009년 경기도에서 김상곤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최초로 학생인권조례가 교육청에 의해서 추진되기 시작했다. 2009년 9월, 경기도 교육청은 교장, 교사, 사회복지 전문가, 인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 자문위원회를 꾸리고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연구하는 연구용역팀을 선발하여,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조례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자문위원회와 연구용역팀은 일본가와사키 아동권리조례, 2006년 국회에 상정되었던 학생인권법

안, 광주 학생인권조례안, 경남 학생인권조례안, 그리고 2008년 인권교육센터 들 등 여러 인권단체들이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를 받아서 작업한 “학생인권 지침” 등을 두루 참고했다. 물론 그 동안 학생들이 제기해온 다양한 학내 인권 문제들이 반영되었고, 학생인권에 관해 계속 활동하고 연구해온 인권활동가들이나 교수, 교사들이 자문위원회와 연구용역팀에 참여했다. 청소년인권 운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학생참여기획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생인권조례에 관해 생생하면서도 인권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학생인권 운동이 지난 세월 동안 문제제기하고 축적해온 사례와 담론들이 있었기에,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3개월의 과정을 거쳐 2009년 12월, 탄실한 내용으로 초안이 발표될 수 있었다.

초안 발표 이후에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은 많은 산을 넘어야 했다. 공청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 대립이 있었고, 학생들의 경우는 대다수가 학생인권조례를 지지했지만 교사, 학부모들의 경우는 우려 반 지지 반이었다. 특히 두발복장규제나 체벌에 대한 의견 대립이 많았다. 재미있는 것은, 경기도나 서울에서 설문조사를 해보면 “학생인권조례 등 학생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면 다수가 ‘필요’하다고 대답하면서 정작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물어보면 찬반이 반반 또는 4:6 정도로 나온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찬성하지는 않는” 불합리한 어른들이 많은 셈이었다. 이는 학생인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편견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었다.

동아일보, 중앙일보, 문화일보 등에서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을 방임하자는 반교육이라거나, 집회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항이 초중고학생들을 운동권으로 만들려는 좌익 세력의 음모라는 비난을 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도 명시적으

로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 사상의 자유에 대한 대단히 몰상식한 비난이었지만, 결국 교육청에서는 그런 비난을 의식하였는지 집회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조항을 삭제했다. 사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에 대해 대체로 잘 정비된 훌륭한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일부 부분은 타협의 결과 다소 애매한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 예컨대 두발자유에 대해서 “학생은 두발 복장 등을 통해 개성을 실현할 자유를 가진다. 특히 학교는 머리 길이를 제한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쓴 조항은, 두발완전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며 머리 길이 제한을 특히 더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과, 머리 길이 제한만 금지되는 것이고 그 외의 염색이나 파마 등은 학교에서 규제할 수 있다는 해석이 모두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었다. 교장들, 교사들은 있지만 학생들은 없는 자문위원회의 성격상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거기에 더해서 반인권적인 언론의 공세로 집회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등의 조항이 삭제되고 그 내용이 애매하게 처리된 상태로 경기도 교육청에 의해 2010년 5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발의되었다.

그러나 이런 조례안조차도 바로 제정된 것은 아니었다. 경기도 교육위원회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리하지 않았다. 결국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김상곤 교육감이 재선되고 경기도의회가 김상곤 교육감에게 우호적인 민주당 도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한 이후에야, 2010년 10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제정될 수 있었다.

학생인권조례, 어디로 가는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벌써 반년 정도가 지났다. 경기도 학교들은 과연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훌륭한 학교로 거듭났을까? 굳이 점수를 매긴다면 50점 정도이다. 물론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덕분에 학교생활이 더 좋아졌다는 학생들은 결코 적지 않다.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을 그 전에는 강제로 무조건 시키다가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에는 자율화한 학교들도 제법 많으며, 체벌이나 소지품 검사 등도 줄거나 사라졌다. 특히 두발길이규제가 없어진 학교들이 많아서, 숨통이 트였다고 하는 학생들이 많다. 정확한 수치를 이야기하긴 아직 어렵지만,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로 학교의 인권 현실이 여하간 좀이라도 좋아졌는지, 학교생활이 조금이라도 즐거워졌는지 물어보면 대략 70% 정도 학생들이 그렇다고 하지 않을까?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게 많다. 예컨대 상당수의 학교들이 여전히 휴대전화를 원천 금지하고 압수하는 것을 고수하고 있으며, 처음에는 두발복장 자유화한다고 했다가 좀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두발복장 단속을 슬그머니 시작한 학교들도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또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반영해서 학칙을 인권적으로 개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기고 요식적으로 학생들을 들러리 세워놓고 ‘눈가리고 아웅’ 식 학칙 개정을 한 학교들이 다수이다.

이런 현실에 항의하면서 부천 소사고에서는 2010년 12월,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연일 시위를 벌였다. 학칙개정심의위원회에 학생들의 참관을 허용하고, 소수 모범생 학생들이 아니라 전체 학생들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과정을 거치라는 요구를 하면서 벌인 시위였다. 그 결과 학칙개정심의위원회에서는 학생들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된 학칙이 통과되었다. 소사고의 학생들과 부천 지역의 여러 학생들은 함께 모여서 6월 4일, 부천 학생인권 집회 “학생인권조례를 아십니까? - 학생인권의 진짜 주인 학생이 외치다!”를 열었다.

또한 2011년, 남양주의 새로 생긴 학교인 가운고에서는 학교 측이 학칙 개정 과정에 대해 학생들에게 제대로 공지도 하지 않고 학칙 개정 전후 의지를 보이지 않는 일이 있었다. 가운고등학교는 지나치게 간간한 벌점규정 때문에 2011년 들어 3개월 동안 40명이 퇴학, 강제 자퇴(?)를 당한 학교였다. 학생회에서는 5월까지 경기도 교육청에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개정된 학칙을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소극적인 학교 대신 스스로 나서서 설문조사를 하고 언론에 제보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펼쳤다. 학칙 개정 회의에서는 5시간, 6시간씩 끈기 있게 자신들의 주장과 논리를 내세웠다. 이런 과정을 통해 결국 학생들은 생활규정과 벌점규정 등을 더 인권적으로 바꾸는 데 성공했다.

학생인권조례의 한계와 미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고 시행된 지 아직 채 1년도 안 된 지금, 학생인권조례는 완성형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학생들의 인권이 자동적으로 보장되고 학교가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확하다. 그것은 학생인권조례의 현실적인 한계이다. 학생들이 스스로 학생인권의, 학생인권조례의 주인이 되고 학교 운영에 주체로 참여할 때, 그리고 자신들의 인권을 위해서, 침묵이 아닌 행동을 보여줄 때, 학생인권조례는 비로소 현실적인 힘을 가지고 완성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아직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는 말할 것도 없다.

한편, 학생인권조례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도 분명히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조례'이기 때문에 상위법인 법률을 넘어서는 내용을 담을 수 없다. 그러나 학생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는 현실은 법률, 즉 초중등교육법의 조항 내용이 학생들을 배제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다. 그래서 어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이 상정되었는데 보수적인 학부모, 교사들이 대다수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기각을 당하기도 했다. 좀 더 전국적으로, 그리고 더 확실하게 학생들이 주체가 되는 학교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도 필요하다.

또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에 대한 가장 커다란 인권 침해 중 하나인 교육정책과 경쟁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강제적인 자율학습·보충수업을 금지하더라도, 입시경쟁교육의 현실상 학생들의 선택이 '자율학습이냐 학원이냐 과외냐' 정도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면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 UN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인권 침해라고 개선을 권고한 한국의 경쟁적 교육 환경을 어떻게

바꿀지, 한국 학교 교육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학생인권조례는 답해주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 역시 학생인권조례에 그 실마리가 있지 않을까?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도 존엄한 인격체이며, 학생들의 민주적 참여와 소통 속에서 교육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직접 권리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학생들이 직접 자신들의 힘으로 참여하고 행동하지 않는 한, 법률의 문제도 교육정책과 구조의 문제도 바꿀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좀 더 자율적인 시간을 보장하고,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을 보장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변화의 '조건'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바로 학생들의 저항과 행동에서부터 와서, 학생들의 저항과 행동 그리고 참여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안 中
개성·야자및보충수업·핸드폰소지규제·체벌에 대한
반대측 종합 발제

- 발제자 : 철원고 정현호, 철원고 박경환
철원고 김현우, 철원고 윤동주

학생인권조례안 中 체벌금지와 관련한 반대입장

- 발제자 : 철원고 정현호

1. 체벌의 나쁜점은 인정하지만 전면 금지는 반대한다.

- 물론 학생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학교 안에서의 교사의 교권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 체벌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제지하는데 가장 효과가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다른 수단으로 효과를 볼 수 없는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2. 적절한 대안의 부재.

- 체벌을 전면 금지한다 하더라도 현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적절한 대안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 체벌 대체교육의 핵심인 성찰교실이 대부분 마련되지 않았고, 이를 운영할 상담교사 배치율이 역시 전국적으로 8 % 가 안된다.

[2010-11-07 YTN 뉴스]

* 당장 성찰교실에서 진행할 프로그램도 마련되지 않은데다 성찰교실을 찾아 올 아이들이 늘어날 경우 일상적 상담 업무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2010-11-07 YTN 뉴스]

* 인터뷰 홍대우 한국전문상담교사 회장

: 일반적인 상담을 해야 할 애들이 소외 되고, 문제아를 뒤치다꺼리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쳐지면 전문상담교사의 할 일 도 상당히 흔들리게 되고 성찰교실이 제대로 정착하기 힘들어 진다.

[2010-11-07 YTN 뉴스]

* 외국에는 사회적으로 교직 경험이 3년 미만인 교사는 체벌을 실시할 수 가 없지만 우리나라는 그 어느 누구나 규제 없이 실시할 수 있다. [출처: 네이버 블로그]

* 외국에서는 여학생은 여교사만이 체벌을 실시하도록 지반 교육방국이 못 박은 반면 우리나라는 여학생에게도 남교사가 체벌을 실시하여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출처: 네이버 블로그]

<체벌 대체 '생활평점제 활용'이 42.7%>

[아시아경제] 서울지역 일선학교에 체벌이 전면 금지된 가운데 교사들은 체벌 대체수단으로 '생활평점제'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가 서울 24개 지역별 초·중·고 25곳의 학생 914명을 설문조사해 23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체벌 금지 이후 '학교에서 어떤 벌을 가장 많이 받느냐'는 질문에 42.7%가 '생활평점제'라고 대답했다. 이어 '성찰교실' 14.2%, '학부모 내교 및 면담' 12.1%, '교실 지도' 10.1%, '봉사활동' 7.9%의 순이었다.

교총은 이에 대해 "생활평점제는 기존 규정으로 다른 대안이 없어 더욱 의존하고 있는 것 같다"며 "평점제는 징계와 연관되기 때문에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체벌금지 전후의 지도방법, 수업환경 변화 등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좋아졌다'는 응답보다는 '악화됐다'는 답변이 많았다.

결론)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체벌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방법을 사회적으로 제시해야한다.

3. 체벌을 전면 금지했을 때 사회로까지 번질 수 있는 무질서함.

- 지금 현재 학교 현실상 체벌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체벌이 전면 금지 된다면, 올바른 사회인을 육성하는 학교에서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학생에게 올바른 길로 지도할 방법이 사라지게되어 나중에 그 학생이 사회에 나갔을때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 교총이 체벌 관련 고충 사례를 접수한 결과 일부 학생들이 체벌 금지를 빌미로 모든 교육적 지도를 무시하는 경향이 더욱 심각해졌다는 민원이 1주일 사이 70여건이나 접수했습니다.

[2010-11-07 YTN 뉴스]

4. 인격을 무시하는 체벌은 체벌자체가 아닌 체벌은 가장한 폭력이다.

- 김홍도에 “서당” 작품에는 맞는 학생보다 훈장이 더 괴로워하는 모습으로 표현 되어 있는데, 김홍도는 이 작품을 통해서 스승이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그렸을 것이다. 이처럼, 원래 체벌의 목적은 제자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도



하는 한 방법인 것이다.

- 우리가 사회적으로 문제시하고 있고 사라져야겠다고 하는 학생체벌은 가혹한 행위로 인해 학생에게 물리적 정신적으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지 교실 뒤편에 서있게 하는 정도의 체벌은 아니다.

5. 문제가 되고 있는 체벌은 아이들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교사의 체벌

방식이다. 체벌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체벌을 행하는 교사의 성품과 행동에 따라 체벌 효과의 성패가 나뉘는 것이다. 때문에 올바른 체벌을 위한 교사훈련이 필요하다.

- 최근 큰 이슈를 가져온 '오장풍 교사 사건' 처럼 체벌 전면 금지를 외치고 있는 찬성측은 언론에서 밝힌 기사만 가지고 모든 대한민국의 선생님을 나쁜 시선으로 바라보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는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정말 많다. 오장풍 교사처럼 학생의 인권을 무시하고 무차별한 폭행을 저지르는 교사는 극 소수에 불과하다.

학생인권조례안 中 개성과 관련한 반대입장

- 발제자 : 철원고 김현우

저희는 외모에 대한 과도한 개성 표현을 반대합니다. 미국 환경운동연합에서 연구한 결과 10대 여학생들이 즐겨 쓰는 화장품에 호르몬 작용을 방해하고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성분들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10대 화장품들은 화장을 빨리 시작할수록 더 쉽게 위험에 노출 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 메이크업으로 불리는 짙은 화장이 사회에 유행하면서 그것을 따라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장에 대한 엄격한 법규가 없는 이 시점에서 학교에서조차도 학생들의 짙은 화장에 대해서 규제하지 않는다면 화장을 하는 학생들의 건강이 나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화장을 하는 것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국 공영방송인 BBC에서는 '한국에서 교복치마가 짧아지면서 이에 수반되는 비용 또한 늘고 있다.'고 말했고 강원도 의회에서 '교실 책상 앞에 앞 가림판을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70만 달러의 예산을 승인할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으며, 이어서 '여학생들이 갈수록 치마를 짧게 입어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BBC는 '강원교총은 앞 가림 판을 설치하는데 비용을 낭비하지 말고 교복에 대한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훨씬 쉽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문제와 더불어 외관상의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경기도 지역의 여학생들의 치마의 길이가 과도하게 짧아져 보는 사람들이 민망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특히 일부 중고교생들의 교복치마는 보기에 아찔할 정도로 짧아 탈선이나 성범죄 등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학부모들은 혹여 자신의 아이들이 성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두발을 규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성교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창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큰 시기에, 멋지게 하고 다니는 이성을 보게 되면 특별한 제제가 없는 한, 사귀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학생들이 연애를 하고 성관계를 갖습니다.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미혼모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두발까지 자유롭게 해주어 학생들 간의 이성교제를 부추길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남학생 머리가 모두 뽀뽀, 여학생 머리는 촌스러운 단발이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학생간의 연애가 드물었죠. 그 시절 사람들은 모두 이성에 대해 관심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서로의 외모가 그리 매력적이지 않은 것이 한 몫을 한 것입니다. 그 시절의 동경의 대상은 친구네 대학생 누나나, 학교의 총각 선생님정도였죠. 아니면 브라운관에 나오는 연예인들이거나 말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대상을 동경하며 사춘기를 지냈기 때문에 이성간의 사고가 없었던 것입니다. 누군들 학생들이 좀 더 예쁜 모습으로 다니는 걸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정도의 두발로도 학생이 낼 수 있는 멋은 충분히 낼 수 있다고 판단되며, 과도한 멋은, 자칫 학생으로서의 일상을 이탈할 우려가 있습니다. 방학이 되면 어려 보이는 여자들이 화장을 하고 스커트를 입고 오오삼삼 길거리를 다닙니다.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거나 중학교에 입학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학생이라는 사실에 간혹 놀랄 때가 있습니다. 중학생은 물론, 초등학생까지 담배에 술에 섹스까지 서슴치 않는 이런 시대에는, 다소 불합리하게 느껴지더라도 학생들의 외모 규제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개성 표현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알지만 공공의 이익과 본인의 건강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라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학생인권조례안 中 야간·보충수업 과 관련한 반대입장

- 발제자 : 철원고 박경환

인권조례 반대 속 야간자율학습과 보충학습은 강제 실시 되어야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야간자율학습과 보충학습이 자율화 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 되고 있고 그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야간자율학습과 보충학습을 타율적으로 재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야간자율학습과 보충학습을 강제로 실시 할 경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최고의 장점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의 형성 기반 마련입니다. 자기주도학습으로 인하여 학생이 공부하는 법을 깨닫고 학습신장에 도움이 된다면 어느 무엇보다도 큰 호재일 것입니다. 또 두 시간을 교내 수업시간으로 즉, 공교육시간으로 활용하므로써 우리가 우려하던 사교육 비중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일률적으로 시간을 맞춰 줌으로써 스스로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학생에게 있어 무난한 공부 방식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이밖에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야간 자율학습과 보충학습시간에 학생들을 교내에 있게 하지 않고 교외에 있게 한다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본분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만약 야간자율학습과 보충학습이 이루어진다면 그 시간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시간이 아닌 훌륭한 학습의 시간으로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이 두시간을 학생들에게 제공함과 더불어 학습의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학교의외에 공부할 곳이 딱히 없는 학생의 경우 학교라는 공간은 학습을 위한 최선의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학생을 자율화로 인하여 내몰게 된다면 이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학생을 봐주지 않고 학생을 위하지 않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과연 학생의 인권을 찾아주자는 목적을 가진 인권조례안이 우리에게 있어 정말로 인권을 지켜주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인지 크나큰 의문이 듭니다. 이처럼 학생을 위하지 않는 공교육의 제한은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즈음 야간 자율학습이 끝난 후 여학생의 경우 학교에서는 안전하게 귀가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 심야의 시간에 교외에서 여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결코 인권을 찾아주는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계획, 장소, 환경, 안전성 이 모두를 고려하면 야간자율학습과 보충학습의 타율성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야간자율학습에 있어서 교사와 학부모의 찬성 여부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아래의 자료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교사 학부모 학생 2/3 야간자율학습 '찬성'
인문계 고교 10개중 8개 학교가 야간자율학습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사, 학부모, 학생의 3분의 2가 자율학습 시행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BS 교육 토론프로그램인 「사제부일체」가 여론조사회사인 미디어리서치에 의뢰, 지난달 24~25일부터 서울을 비롯한 전국 7개 도시 인문계 고등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등 총 316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8.8%가 현재 '야간자율학습을 시행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67.7%가 자율학습시행에 찬성한다는 응답을 보였다.
찬성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찬성 이유를 묻자 '스스로 학습능력을 키운다'(32.7%)와, '성적향상에 도움'(32.2%), '사교육비 절감'(24.3%). 학생들 관리 감독의 효과'(9.8)순으로 나타났다.

이 기사만 하더라도 교사와 학부모의 찬성 의견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습능력 신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야간자율학습과 보충학습의 이치에 맞게 교사들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시간을 학교에서 알맞게 활용하는 것은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사들에게도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야간자율학습과 보충학습의 타율적 재제 찬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물론 우리 학생들의 인권은 정말 중요하고, 지켜져야 함이 마땅하지만 우리가 지켜주려는 인권의 모습이 과연 학생의 입장에서 이익이 될 판단일지는 여실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학생인권조례안 中 핸드폰 일괄규제와 관련한 반대입장

- 발제자 : 철원고 윤동주

카이스트와 영국 런던대학교 정신의학과 글렌 월슨 교수팀이 학생과 일반 직장인들 1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문자, 핸드폰, 게임 등을 주기적(10분 간격)으로 게임을 하거나 문자를 주고 받은 경우 평균 IQ는 30~50%, 일이나 학업의 능률은 50%이상 저하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뇌는 한가지의 일에 집중할 때 그 사람의 능력이 모두 발휘되는데 주기적으로 다른 일을 하거나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으면 뇌는 여러 가지 일을 복합적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문자, 게임 같은 최신 통신기술에 뇌는 큰 영향을 받고 판단력이 극도로 약해져서 IQ나 집중력, 일이나 학업의 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연구결과가 공개되었다.

또한 학생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핸드폰이 필요한 이유는 실질적 목적인 전화(17%)보다 게임(42%), 문자(41%)등 핸드폰이 가지고 있는 부가적 기능인 경우가 높았다.

거의 대부분 학교에서는 공중전화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만 한다. 또한 "1541", "1677" 등 수신자 요금부담통화(콜렉트 콜)를 할 수 있는 통화 서비스가 갖추어져 있어 급한 전화나 통화를 돈이 없는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집안에 큰 사고가 발생하거나 학교 내에서 큰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담임선생님께서 연락을 취하시거나 학교로 전화를 하는 등 대응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 내에서는 핸드폰을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핸드폰을 학교에 등교해서 선생님들이 수거했다가 끝나고 돌려주어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어른들은 믿기 어렵겠지만 휴대폰을 학원 또는 학교 수업시간

에 이용하는 친구들이 적지 않다. 수업시간에 문자를 보낸 적이 있는지 에 대한 응답으로 '있다'가 68.5% '없다' 가 29.9% 기타 1.6% 로 나와서 예상외로 수업 및 자습 시간에 문자를 날리는 친구들의 수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업시간에 선생님 몰래 문자를 보내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더욱더 놀라운 것은 수업시간에 전화통화를 하는 친구들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수업시간에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있다' 가 10.4% '없다' 가 87.3% 기타 가 2.3% 로 결과가 나왔고, 우리는 결과에서 수업시간 또는 자습시간에 휴대폰으로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는 사람이 예상외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수업시간에 전화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주고 받게 되면 수업시간이 소홀해져서 학교 성적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게 되면 옆에 친구 까지 수업을 못 듣는 피해가 생기게 된다. 또, 만약 선생님께 들키기라도 한다면 선생님께 혼이 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교실 전체의 수업분위기가 깨져 교실내의 모든 친구들이 수업을 듣지 못하고 시간을 버리게 되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또한 건강문제를 들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얘기지만 휴대폰에서는 전자파가 매우 많이 발생한다. 전자파란, 전기가 흐를 때 발생하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주기적으로 바뀌면서 생기는 파동을 말한다. 이 전자파는 휴대폰으로 전화번호를 누른 뒤, 통화버튼을 눌러 기다리는 동안 안테나와 휴대폰 본체 연결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청소년들은 그 점을 주의 하지 않고 사용하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휴대폰을 사용할 시 두통을 느꼈냐는 질문에 응답한 학생들 중 36.2 %의 학생들이 '두통을 느낀다' 고 하였고 55.9%의 학생들이 '두통을 느

까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7.9%의 학생들이 그 밖의 의견에 응답하였다.

학생들의 응답 결과와 같이 휴대폰 사용으로 두통을 느끼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 이것은 민감한 체질이 특히 그런데 아직 성장을 모두 끝내지 못한 청소년들이 휴대폰을 사용해서 두통을 느끼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또한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말도 있다. 이는 개인이 핸드폰을 갖지 말자가 아닌 학교 내에서 핸드폰을 사용하지 말도록 핸드폰을 선생님들이 수거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제에 어긋난다.

학생인권조례안 中
개성·야자및보충수업·핸드폰소지규제·체벌에 대한
찬성측 종합 발제

- 발제자 : 철원고 박상준, 철원여고 이영욱
철원고 유영준, 철원여고 김훈지

학생인권조례안 中
개성·야자및보충수업·핸드폰소지규제·체벌에 대한
찬성측 종합 발제

- 발제자 : 철원고 박상준, 철원여고 이영욱
철원고 유영준, 철원여고 김훈지

안녕하세요 2011년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토론의 찬성 측 패널 박상준 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현재 경기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권조례안에 대해 긍정적 입장이고, 하루 빨리 강원도에도 인권조례안이 통과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많은 학교에서 자율이라는 명목 하에 강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보충/야자에 대해 말해 보려고 합니다. 교육기관에서는 학생들의 사교육을 약화 시키고 공교육을 강화시키기 위해 보충/야자를 한다고 하지만 현재 학교의 모습은 여전히 사교육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반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충/야자 때문에 학생들은 야자가 끝난 뒤 혹은 주말을 이용해 학원이나 과외를 하는 등 사교육의 약화는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학생에게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하지만, 자신의 꿈이 교과 공부 이외의 다른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충/야자 때문에 주말 밖에는 진로개발을 할 시간이 없고 자신의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주말 뿐 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저희는 강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보충/야자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다음으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학교 수업 시간 내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입니다. 먼저, 일상생활에서 휴대전화가 흔히 사용되어 일반화 된 상황에서 학생들에게만 휴대전화를 규제하는 것은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2007년 1월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휴대전화 규제는 헌법 제 10조가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침해와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위원회가 전국에서 최초로 통과시킨 '학교 내 학생 휴대전화 관리에 관한 조례'의 주된 목적은 면학 분위기 조성 and 학생들의 건강입니다. 학교라는 공간은 배움을 받는 공간이기에 면학 분위기 조성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면학 분위기 조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학생들의 건강이 주된 목적이었는데 휴대전화에 전자파와 같은 것이 문제가 된다면 휴대전화 생산 과정이나 사용 습관에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생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보충, 야간 자율 학습도 학생들이 잠을 잘 수 있을 시간에 공부를 무리하게 시켜 학생들의 건강을 해치는 행동에서 모순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선생님들의 체벌입니다. 요즘 들어 더욱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체벌에 대해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의 체벌은 단지 현재가 아닌 과거서부터 존재해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른들은 체벌이 훈계의 방법 중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생각은 구시대의 유물일 뿐입니다. 2011년 민주 정신이 자리 잡은 이 시점에서 육

체적 훈계 즉, 체벌보다는 선생님과의 면담, 상담을 통해 대화로써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훈계방법이 더욱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체벌은 일시적 효과일 뿐 학생들로부터 반감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는 체벌이 아닌 대화로써 학생들을 바른길로 인도할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진정한 선생님의 역할은 교과 수업 뿐만이 아닌 학생들로 하여금 바른 인성을 만들어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체벌이라는 자체가 바른 인성을 만들어 주는 것에 대한 모순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어른들은 학생은 학생다워야 한다면서 학생은 학생답게 두발이 단정해야하고, 학생답게 교복의 길이가 길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청소년은 먼저 학생이기 전에 인간이고 학생다움이 꼭 두발상태와 교복의 길이에 의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생의 개성 표출에 대해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의 강압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형성된 것이고 지금의 사회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생에 대한 개성 표현의 규제는 변화하는 사회에 맞추어 새롭게 다시 적용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학생들의 개성 표현 중 규제를 두어야 한다고 논란이 되고 있는 화장에 대해 의견을 말해 봅니다.

화장은 더 이상 성인들의 전유물이 아닐뿐더러 여성들의 개성 표현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십대의 화장이 피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하지 못하게 규제를 두는 것 보다는 올바른 화장품 사용법을 알

려주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지키는 학생이 되길 바라고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도 성인이 되어 학생 때 배운 올바른 화장품 사용법으로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강원도에도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어 강원도학생들이 보다 많은 자율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실천하는 학생으로 성장해 건전한 사회를 형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 록>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학생학부모지원과)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헌법」 제31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교직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을 말한다.
4. “학생의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학생의 인권이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학생의 인권에 대한 제한은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학생이 그 제·개정예 참여한 학칙 등 학교 규정으로써 할 수 있

다.

제4조(책무) ①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학생의 인권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과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는 학생의 교육활동에 적합한 교육시설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학생의 인권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5조(차별 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제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③ 학교와 교육감은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학교폭력 및 체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위험으로부터의 안전) ① 학교는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의 장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3절 교육에 관한 권리

제8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

② 학교는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문계 고등학교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와 교육감은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① 학생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휴식을 취할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에 관한 권리

제11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두발의 길이를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정당한 사유와 제18조의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는 학교의 규정으로써 제11조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제12조(사생활의 자유) ① 학생은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직원이 교육목적으로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하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직원은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개인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도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④ 학교는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는 수업시간 등 정당한 사유와 제18조의 절차에 따라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및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

⑤ 학교는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 장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교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절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④ 학교는 교육비 미납사실 등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정보에 관한 권리)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 중에 부정확한 내

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④ 학교는 예·결산 등 학교 재정 관련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5절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제15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학생에게 여러 종교행사 가운데 하나 및 대체과목 없는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

제17조(자치활동의 권리) ① 동아리 등 학생의 자치적인 활동은 보장된다.

②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성적 등을 이유로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18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제출권을 보장해야 한다.

제19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 운영 및 교육지원청의 교육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장과 교사는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생대표는 학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학교장과 교육감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

제20조(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가정위기, 비행일탈 등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발견, 진로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와 교육감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등 경제·사회·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

려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교육감은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 및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수립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

④ 학교와 교육감은 특별한 상담 및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 사회의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제21조(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적절한 양과 질의 도서 구입과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적절한 탈의 공간·적절한 휴게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문화를 향유할 권리) ① 학생은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공연, 전시 등의 문화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 및 지역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3조(급식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교육감은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직영급식과 의무교육과정에서의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건강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권을 가진다.

②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생리 중에 있는 여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학생이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절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학교는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 및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절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26조(상당 및 조사 등 청구권)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당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모든 학생의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의 청구권과 청원권 행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 및 학교장과 교육감은 청구 및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 그 처리 결과를 청구 및 청원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절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제27조(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① 학교와 교육감은 빈곤, 장애,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운동선수 등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와 교육감은 소수 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과 소수 학생을 위한 진로 및 취업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교육감은 장애 학생에게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며,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학교와 교육감은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학교와 교육감은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문화가정 학생의 전입학 기회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학생인권의 진흥

제1절 인권교육

제28조(경기도 학생인권의 날)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경기도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의 날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실시하고, 학생, 교원 및 도민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제29조(홍보) 교육감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이 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 등 학생의 인권에 대한 설명서와 교육용 교재를 일반인용, 중·고등학생용, 초등학생용으로 제작·배포하는 등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학교 내 인권교육·연수) ① 학교는 학생에게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전문계 고등학교 현장실습, 학생 아르바이트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근로권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교원을 대상으로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원연수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학습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1조(교원에 대한 인권 연수 및 지원) ① 교육감은 교원에 대한 각종 연수에 학생의 인권에 관한 내용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인권교육과 교원연수를 위한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32조(보호자 교육) ① 학교는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 또는 간담회를 연 2회 이상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2절 인권실천계획 등

제33조(인권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매년 경기도내 학생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조사 결과가 확정되면 이를 공표하고 경기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실천계획의 작성)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교육활동과 적절한 수준의 교육·복지·휴식 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의 인권 등의 향상을 위한 실천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공청회, 토론회, 지역순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학생, 교사, 보호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35조(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 ① 학생의 인권에 관한 경기도 교육청의 정책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생인권

옹호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교육, 아동복지, 청소년, 의료, 법률,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또는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사람
2. 학생참여위원회의 위원
3. 도민 중에서 학생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참여의지가 있는 사람으로서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사람
4.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 관련 담당 공무원

④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인권실천계획의 수립
2. 학생의 인권에 관한 제도개선
3. 기타 학생의 인권 신장을 위하여 교육감이 제안한 사항

⑥ 위원회 활동의 효율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5항 각 호의 기능 중 일부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학생참여위원회) ① 교육감은 학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는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학생참여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모집한 학생들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선발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소수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20명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의 절

차를 밟아 교육감이 위촉할 수 있다.

④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교육감 및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권실천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생인권 실현 및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⑤ 교육감은 지역교육청별로 학생참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7조(학교별 평가 및 지침 제시) ① 교육감은 2년마다 학교별 학생인권실현 상황을 조사하고, 그 개선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2장에서 규정하는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각 학교에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시민활동 지원)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활동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그러한 시민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제39조(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①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를 위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을 둔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상임 5명 이내로 하며, 교육감이 정하는 각

자의 관할지역에서 활동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의 인권에 대한 헌법 및 관련 법령 그리고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의 정신에 따라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⑥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 권고 등 중요한 사항은 학생인권옹호관 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40조(겸직금지)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교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경기도교육청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나 단체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41조(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2.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 및 직권조사
3.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 및 조치 권고
4.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에 대한 공표
6. 기타 위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인권옹호관은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1. 제3자가 한 조사청구에 대해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조사나 상담이 청구될 당시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 3. 조사청구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 4. 그 밖에 학생인권옹호관이 상담 및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2조(사무기구 등) ①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 ② 사무기구에는 공무원 및 전문조사원 등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한 인원을 둔다.
- ③ 사무기구에 배치된 공무원 및 전문조사원은 학생인권옹호관의 지휘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무기구 및 전문조사원에 관한 사항과 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지역 교육지원청별 상담실) ① 각 지역 교육지원청마다 학생인권상담실을 둔다.

- ② 제1항의 상담실은 학생의 인권에 관한 상담을 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시급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및 조치)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학생인권옹호관은 사건을 조사한 후에 본청, 지역 교육지원청, 학교 및 교직원에게 대한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시정권고 등의 상대방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학생인권옹호관이 제2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④ 학생인권옹호관으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본청, 지역 교육지원청, 학교 및 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학생인권옹호관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생인권옹호관의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45조(조사)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제41조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청, 지역 교육지원청 및 학교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교직원 및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할 수 있다.

-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제44조제1항의 구제신청에 대해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
- ③ 교직원과 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자료요구 및 질의, 제2항의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46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①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학칙 및 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이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 ②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교원, 보호자,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학생대표로 구성한다.
- ③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 ④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규정 제·개정을 마친 후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교육감은 규정개정의 방향, 절차,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제4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과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교육감은 제39조에 따른 상임 학생인권옹호관에 관한 제도가 정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학생인권옹호관을 비상임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 이 조례가 공포된 이후 6개월 이내에 학교는 제46조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